투고 규정

Ⅰ. 논문 투고규정

1. 분　　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등 남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제반 연구논문(어문학, 지역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2. 종　　류: 연구 논문
3. 분　　량: 연구 논문의 경우 각주, 참고문헌, 도표를 포함하여 단독논문일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공동논문일 경우 250매 분량을 넘지 못한다. 분량을 초과할 경우 원고지 1매당 1,000원씩을 초과 납입하여야 한다.
4. 언　　어: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나 인도어 등 기타 언어로도 쓸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5. 제출형식: 흔글 2007 버전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한 원고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아 인도연구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고 시스템 (JAMS, https://jsas.jams.or.kr/co/main/jmMain.kci)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6. 제출마감: 매년 4월 15일(1호), 7월 15일(2호), 10월 15일(3호), 1월 15일(4호)까지로 한다.
7. 논문심사일: 매년 4월 30일(1호), 7월 31일(2호), 10월 31일(3호), 1월 31일(4호)까지로 한다.
8. 심사후 교정일: 매년 5월 10일(1호), 8월 10일(2호), 11월 10일(3호), 2월 10일(4호)까지로 한다.
9. 출 간 일: 매년 5월 31일(1호), 8월 31일(2호), 11월 30일(3호), 2월 28일(4호)에 출간한다.
10. 게재제한: 단독 논문이건 공동논문이건, 같은 호에 동일 필자가 2편 이상을 투고할 수 없다.
11. 게 재 료: 교외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시 30

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12. 저 작 권:①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도연구소에 귀속된다.
③ 『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자신의 논문을 편집된 책이나 기타 출간물에 싣고자 할 때는 인도연구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논문 필자는 투고 시 JAMS 홈페이지에 공지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자필 서명한 후, 이를 JAMS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13.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한다.
14. 공동저자일 경우 제 1저자의 경우 '*'로, 제 2저자의 경우 '**'로 이름과 소속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Ⅱ. 논문 집필 순서

1. 논문 제목(연구비 수혜 사실은 논문제목 옆에 ' * '를 표시하고 수혜 내용은 각주로 처리한다.)
2. 기고자의 성명과 소속
3. 논문 목차
4. 국문초록(1000자 이내), 국문주제어(5-10개)
5. 본문(표 및 그림)
6. 참고문헌
7. 영문요약(A4 용지 1매 정도, 400단어 이내) 및 영문 Key words(5-10개): 논문 제목, 기고자 성명, 소속기관의 영문명 및 요약문으로 구성
8. 투고자 인적 사항

Ⅲ. 논문 집필 양식

1. 항목별 대소번호는 ' Ⅰ, 1, 1), (1)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2. 한글 이외의 용어 표기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한다.
   예) 전인도(全印度)
2) 외래 용어: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인도 국민당(Bharatya Janata Party)
3) 산스끄리뜨어 등 인도어의 발음 표기는 통일된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원어발음에 가깝게 우리말로 표기한다.
4) 외국 인명 및 지명: 외국 인명 및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간디(M. K. Gandhi)
5) 외국 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등)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 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인도 국민당(BJP, Bharatya Janata Party)은 종교 공동체주의를 십분 활용하였다. BJP에 대항하여 ..... ".

3. 인용의 표시
   1)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네루의 경제정책은 후대의 경계사가들에 의해 크게 비판을 받았다"(김철수, 2009).
   2) 인용문 안에 다른 인용문을 넣는 경우에는 큰따옴표 안에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4. 출전(Source Reference)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표시(인용문헌)는 해당 문헌을 인용문이 위치한 자리에서 바로 밝힌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있는 경우: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 …홍길동(1988)은 …”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샤르마(Sharma, 2001)는 …”
2)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없는 경우: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인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88) …” 또는 “(Sharma, 2001)”
3) 면수는 출판년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숫자만을 표기한다 “... 샤르마(Sharma, 2001: 56)” 또는 “(홍길동, 1994: 12)” 등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또는 “et al.” 이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 1990: 35-38)” 혹은 “(Sharma, et al., 1976: 109-10)”
5) 동일인이 같은 해에 저술한 논문이나 저작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알파벳 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 2009a: 33"
6)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홍길동, 1990: 18; Sharma, 2000: 72; Varma, 1999: 87)”
7) 국문으로 된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지명, 발행 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년/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1993/04/08: 5)” 혹은 “(『신동아』, 1993/02: 233)”. 영문으로 된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지명, 일 월 년(월간지의 경우 월/발행년),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The Hindu,* 22 April 2009, 44)”
8) 간행 예정인 원고 “미간” 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년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 “n.d.”를 쓴다.
예) “…Pye(forthcoming)”, 또는 “홍길동(미간)”, “Coleman(n.d.)…”

9)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10) 인터넷 자료는 각주로 처리한다.
예) 각주 1: 홍길동. "인도의 미래", http://www.hindustantimes.com/452039.html (검색일: 년/월/일)
박인도. "인도의 과거", *인도일보*, 2011년 6월 3일, www.indoilbo.com/news/3405.html (검색일: 년/월/일)
Jha, L.K. "India's Future", http://www.thehindu.com/452039. html (검색일: 년/월/일)
Gandhi, M.K. "India's Future", *The Times of India*, 2 November 2015, http://www.thetimesofindia/2015/452039.html (검색일: 년/월/일)

5. 인용문헌 이외의 주는 각주로 처리하며(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한 짧게),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이때 일련번호는 1), 2), 3)...로 매긴다.
6. 표와 그림은 <표 1> 혹은 <표 1.1>, <그림 2> 혹은 <그림 2.2>로 표시한 다음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출처를 밝히며, 그 형식은 참고문헌을 따른다.
7.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어 등 동양(한자 사용권)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힌디, 산스끄리뜨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3)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장길산, 1996,『인도의 문화연구』, 서울: 개벽사.

Srinivas, M. N., 1976, *Social Change in Modern India*, New Delhi: Orient Longman.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자의 문헌은 다음의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논문, 기사 등의 경우에는 따옴표 (“‥”)로, 저서의 경우에는 한글의 경우 『 』에 넣고, 인도·유럽어인 경우에는 이탤릭체(*Congress and the Politics of India*‥)로 표시한다.

②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③ 문헌과 문헌 사이는 한 줄을 띄운다.

④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참고문헌 작성시의 유의 사항

참고문헌의 표기시 저자, 출판연도, 책명, 출판장소: 출판사. 순으로 작성한다.

1) 저서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박인도, 1997, 『오늘의 인도사회』, 서울: 책세상.

Bell, Daniel, 199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책표지에 “누구 외”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흥부, 1995, 『인도 소설 인물고찰』, 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Bastin, John and Robin W. Winks, 1999, *India: Selected Historical Readings*, Nendeln: KTO Press.

이인도 외, 1995, 『인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동양사.

2) 학위논문

홍길동, 1992, “카쉬미르 문제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Doc, John, 1993,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India”, Ph.D.diss, India: Delhi University.

3) 편집된 책 속의 글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인도, 1991, "국가권력과 서민사회: 인도의 경험", 김서방·박놀부·이어도 편, 『남아시아의 국가와 시민사회』, 211-250, 서울: 호박사.

Schyd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9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eclintock and Ab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95-123,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홍길동, 1995, "인도의 소수종족", 『남아시아의 종족분포』, 261-180, 서울: 서울 프레스.

4)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스, 1991, "20세기 초 인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운동", 『남아시아연구』, 제 5호, 75-88.

홍길동, 1995, "벵갈 난민의 운명", 『계간 사회비평』, (봄), 101-122.

Birch, Anthony H., 1978,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Vol. 30, No.3, (winter), 325-344.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기사 및 칼럼

홍길동, 1993, "스리랑카 민주화의 교훈", 『중앙일보』, (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2 April), 23.

6) 편저 및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9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elski, George ed.,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14-429,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Ⅳ. 논문 편집 양식(한글 2007 기준)

논문제목

(글자 크기 16 진하게(bold-faced), 문단은 가운데로)

(2줄 띄움)

필자 이름*

(글자 크기 12, 문단은 가운데로, 필자 소속은 각주에 *로 표시)

(1줄 띄움)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
Ⅳ. 나가는 말

(2줄 띄움)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 (글자 크기 9, 왼쪽과 오른쪽여백 5)

(1줄 띄움)

주제어: 인도, ... (글자 크기 9, 왼쪽과 오른쪽여백 5)

(2줄 띄움)

Ⅰ. 들어가는 말 (글자 크기 12.5, 들여쓰기 없음)

(1줄 띄움)

이 논문은 ..... (글자 크기 1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1줄 띄움)

1. 중간제목 (글자 크기 11, 들여쓰기 2)

(1줄 띄움)

1) 소제목 (글자 크기 10, 들여쓰기 2)

(1) 소소제목 (글자 크기 10, 들여쓰기 2)

.....라고 생각된다.

---

* 필자 소속, 직위 (글자 크기 8)

참고문헌

(글자 크기 12.5, 문단은 가운데로)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앞의 「투고 규정」의 Ⅲ. 논문 집필 양식 – 5. 참고문헌 항목을 참조할 것.)

(1줄 띄움)

박인도, 1997, 『오늘의 인도사회』, 서울: 책세상.

홍길동, 1992, "카쉬미르 문제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홍길동, 1995, "벵갈 난민의 운명", 『계간 사회비평』, (봄), 101-122.

홍길동·허생·흥부, 1995, 『인도 소설 인물고찰』, 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Bastin, John and Robin W. Winks, 1999, *India: Selected Historical Readings,* Nendeln: KTO Press.

Bell, Daniel, 199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Doc, John, 1993,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India", Ph. D. diss, India: Delhi University.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2 April), 23.

(페이지 바꿈)

〈Abstract〉

(글자 크기 11, 가운데 정렬)

영문제목

(글자 크기 12, 가운데 정렬)

(한줄 띄움)

영문이름*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영문소속은 각주에 *로 표시)

(한줄 띄움)

This Articles …… (글자크기 9, 왼쪽과 오른쪽여백 5)

(한줄 띄움)

Key Words: India, ggg (글자 크기 9, 왼쪽과 오른쪽여백 5)

---

* 영문소속 (글자 크기 8)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인도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인도연구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언어학 영역, 문학 영역, 지역학 영역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장 :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 :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에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윤리규정

제6조 본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남아시아연구(*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아 인도연구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고 시스템(JAMS, https://jsas.jams.or.kr/co/main/jmMain.kci)을 통해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5장 회의

제9조 소집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게재논문을 확정하며, 이를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제6장 논문심사

제11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남아시아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에 대한 연구자가 제한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의 적절성 : 남아시아국가의 어문학, 지역학 및 인접학문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하며,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인 비판,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 연구내용의 독창성 :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은 국내외의 해당 학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5) 형식의 적절성 :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6) 논문초록의 적절성 :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반려 등의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장 심사절차

제14조 접수 : 본 회에서 정한 논문 접수 마감일 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접수하는 즉시 '논문 접수 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단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심사기준 가운데 (1)연구내용의 적절성, (5)형식의 적절성을 지키지 않은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 남아시아연구의 기존 심사자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자정보(KRI) 등에서 검색한 연구자들을 바탕으로 각 투고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한 5~6인 정도의 심사자들을 심사위원 예비명단에 기입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검토한 후 적합한 심사자 3명을 추천한다. 편집위원들의 추천 의견을 모아 다득표로 선출된 심사위원 3인을 확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거절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시 차순위 득표자 순서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16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본 회의 논문 심사서 양식 1부씩을 보낸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7조 심사 :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를 근거로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충분한 수정한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보완이 성의 있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결과 게재 불가 판정이 내릴 경우 또는 수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 보고서 제출 :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본 회의 논문 심사서 양식에 작성하여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 편집위원 회의 : 편집위원장은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결과통보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통보한다.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회원은 심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반론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게재"와 "게재 불가" 중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학회지명 및 발행일 :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명칭은 『남아시아연구(*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로 하고, 2018년부터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지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1) 1호(봄호)의 발행일은 5월 31일, 2호(여름호)의 발행일은 8월 31일, 3호(가을호)의 발행일은 11월 30일, 4호(겨울호)의 발행일은 2월 28일로 한다.

제22조 세부사항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남아시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남아시아연구』의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관련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위조, 변조, 표절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저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 의무) ①저자는 논문 투고 시, JAMS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자 윤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단, 이메일 투고의 경우, 게재가 확정되면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최종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저자는 논문 투고 시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를 본

연구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③ 외국어 논문의 경우는 투고 시에 KCI 유사도검사와 턴잇인(turnitin) 검사를 병행한다. 턴잇인의 경우, 유사율 20%가 넘는 논문은 남아시아연구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저자의 소속 명시)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 8조(연구부정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② 이해상충: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9조(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규정준수)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문제시 조치)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자정보 확인 및 관리)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4조(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준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문제시 조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제18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남아시아연구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인도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3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4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인도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인도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찬완(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위 원: 김경학(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이은구(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이춘호(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박효엽(부산대학교 철학과)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Amitendu Palit(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einz Werner Wessler(Uppsala University)
Jiang Jingkui(Peking University)
Priya Kapoor(Portland State University)

남아시아연구 제28권 1호

2022년 5월 25일 인쇄
2022년 5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김찬완
발 행 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 2173-2277
인 쇄 처 : 다해
서울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3호
TEL. (02) 2266-9247